

**닭고기 일부
수입개방**

우리나라도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나 하나만 잘하거나 국내에서 우리끼리만 잘하여도 안되도록 여건은 변해가고 있다.

양계산업도 대부분의 종계와 배합사료를 수입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 곡물가격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왔었다.

이제 이달부터(7월 1일부터)는 칠면조고기를 비롯하여 닭고기의 일부가 수입개방 됨으로써 양계산물의 국제시세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86년도 하반기 및 87년도 상반기 수출입 기별

공고를 보면 우리와 관련있는 몇가지가 개정 공고 되었는데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부문**

과거 수출제한 승인품이었던 조랑말(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수출) 축협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던 종축 이외의 소, 돼지, 우육, 돈육 등이 모두 삭제되어 자유스럽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그외에 수입이 개방된 밀기울, 미강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곡물 또는 콩의 선별 제분 기타 처리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CCCN 2302)도 농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개방 되었다.

● **수입부문**

농수산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었던 쇠고기, 돼지고기, 면양과 산양의 고기,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의 고기, 설육, 닭고기, 오리고기, 햄, 베이컨등 가공식품 등이 축협중앙회장의 추천으로 바뀌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칠면조(0202 0101), 기타가금류(닭, 오리 제외) 가금류의 식용설육(0202 0200) 등이 수입개방 된 점이다.

당장은 이러한 고기들이 쏟아져 들어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가격의 변동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개 FOB기준으로 닭고기가 kg당 630원 칠면조고기 3,200원(뼈발린고기), 오리고기 1,360원 계란의 경우 난분이 (spray dried egg) 전란분(whole egg powder)이 3,380원 난황분(egg yolk powder)이 3,280원 난백분(egg white powder) 5,960원 계란은 개당 49.50(특란)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도 닭고기의 소비유형이 부분육이나 너겟(nugget) 같은 간편식으로 변해감에 따라 거래도 과거처럼 통닭이나 부분육이 아닌 정육이나 설육(脞肉)으로 거래되는 양이 점차 늘어나갈 것으로 보여 수입에 방심할 수 만도 없게 되었다.

닭고기의 소비가 썬터키 후라이드 치킨처럼 튀김닭이 보급되면서 부로일러 산업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면 2~3년전부터 선진 외국에서 뼈를 발린 닭고기를 고기가 씹힐 정도로 갈아서 양념을 하고 보기 좋게 하트형이나 타원형 등으로 가루를 발라 튀기거나 꼬치를 만들어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2의 부로일러 산업혁명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일부 제품이 보급되어 환영을 받고 있는데 이들 업소를 상대로 수입 설육이 공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루속히 국내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닭고기 수요에 대처하고 생산비를 더욱 저렴하게, 품질은 더욱 높여나가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양계용 배합사료의 수입개방

수입 사료용 곡물의 쿼터제에 대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산비의 60~70%를 배합사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관심한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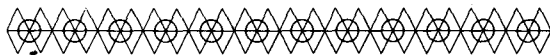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사료곡물의 수입으로 이루어 졌고 사료수급 정책에 따라서 축산업이 큰 영향을 받아온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사료하면 배합사료로 통할 정도로 자급사료 보다는 배합사료에 의존하는 축산으로 발전하였기에 배합사료의 수급정책이 축산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것도 당연한 일이 아닐수 없다.

한때는 전국의 배합사료 제조공장에서 가격이 통제되고 주원료 공급창구가 일원화 되고 배합비율까지 조정되어 확실적인 가격에 확실적인 사료가 공급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와서 생각하면 웃지않을 수 없다.

그후 이러한 각종 통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선진 외국의 제도 연구 등으로 사료공장에 창의력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 짐에따라 그야말로 우리나라 배합사료제조 산업은 눈부신 기술혁명이 이루어 졌다.

그렇게 걱정하던 사료가격도 자율화 함으로써 오히려 값이 떨어지고 안정되었으며 배합사료원료도 다양화되고 품질은 급격히 향상하게 되었다.

자율화정책은 사료효율을 부러일러의 경우에 최소한 0.5이상 향상시켰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2.0이나 1.9가 농장의 기록으로 나타나 외국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질병 등 여건이 외국보다 나쁜 환경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그간 피나는 노력으로 많은 기술 축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술축적이 사료효율을 개선하고 축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해서 배합사료 원료수입에 소요되는 외화를 크게 절감하였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사료공장별 쿼터제가 강력히 시행되고 금년에 와서는 축산업계의 큰 문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쿼터를 정해서 배합사료 생산량을 억제하고 외화도 절감하며 축산물의 생산량도 줄여서 축산업자도 제값을 받도록 하자는 의도로 쿼터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잉 판매는 과잉 생산으로 이어져 국가적으로는 외화의 낭비요. 사료공장이나 축산업자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물리적 한계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모든 사람이 천사와 같이 선량하다는 전제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것

임을 두말할 여지가 없다. 현실은 천사들만이 사는 지상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기능에 맡기고 끊임없는 시장에서의 가격과 품질 서비스 경쟁으로 업계는 풍요로워지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안이한 것을 좇아 발전이 아닌 퇴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부의 금년도 사료수급의 기본목표가

1 도입사료 원료의 절감

- 국내 기존 사료자원의 활용 증대
- 사료 절감 교육 및 홍보 강화

2 도입원료의 안정적 공급

- 적기 적량 확보
- 도입선의 다변화

3 사료의 품질 향상

- 양질의 사료생산 보급

4 사료의 가격안정

- 사료 곡물의 다양화
- 자체 경영개선 유도 인데 수입원료

에 의한 배합사료 생산량을 통제할 경우 양축가들은 배합사료 선택에 제한을 받게되어 원료가 남는 공장은 남고 모자라는 공장은 생산을 못하게 되어 양축가들이 원하는 사료공장이 생산을 중단하게되는 모순이 발생하여 배합사료의 안정

배 합 사 료 생 산 실 적

단위 : M/T

구분 년월	양 계 용				양	돈	낙	농	비	육	우	기	타	합	계	지	수
	육	추	산	란													
1975	104,202		371,370	92,994	568,566	135,505	150,671	33,495	12,758	900,995	100						
1976	173,314		546,354	148,150	867,818	207,074	173,004	43,549	90,081	1,381,526	153						
1977	219,089		697,274	240,561	1,154,924	350,236	265,707	95,528	32,295	1,895,690	210						
1978	304,753		882,076	451,725	1,638,554	498,110	320,728	233,088	2,625	2,693,105	299						
1979	330,230		1,141,449	571,890	2,043,569	1,129,895	438,512	266,206	2,053	3,880,235	431						
1980	295,790		1,126,469	449,593	1,871,862	769,357	513,541	306,333	1,335	3,462,418	384						
1981	248,385		1,055,516	538,171	1,842,072	761,204	470,831	414,699	1,650	3,490,456	387						
1982	248,065		1,084,684	647,092	1,979,841	1,150,528	592,346	672,739	4,347	4,419,801	491						
1983	265,789		1,182,352	797,480	2,245,621	2,013,007	709,936	870,595	12,427	5,851,586	649						
1984	242,806		1,194,328	627,732	2,064,866	1,987,411	852,589	1,072,394	7,699	5,984,959	664						
1985	276,227		1,373,135	660,364	2,309,726	1,923,692	994,282	1,209,042	20,504	6,457,246	717						

적 공급이라는 정부 정책과는 반대의 결과가 생기게 된다.

더군다나 일부 사료공장의 쿼터량 소실은 경제단위 물량의 구매에도 지장을 주어 구매단가의 상승으로 사료의 4번째 목표인 사료가격 안정에도 문제가 생기며 쿼터제 실시는 가격상승과 품질저하를 가져옴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결국은 외화 낭비로 이어진다.

공장별 원료배정 기준도 생산실적 60%와 허가능력 40%를 적용함으로써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보다는 쿼터를 늘리기 위한 불필요한 시설확장 쪽으로 기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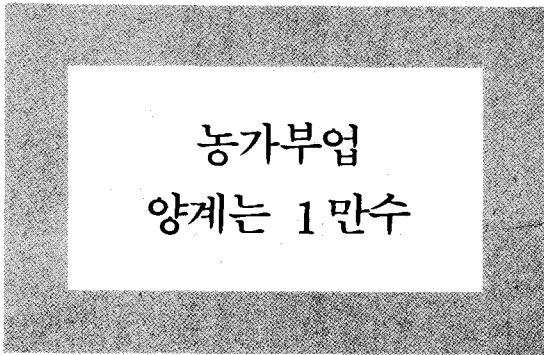
옥수수과 기타곡류와의 사용비율도 곡물간의 가격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

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배합사료의 생산실적은 우리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80년도를 제외하면 매년 높은 신장율을 보였는데 금년도 사료수급계획을 지난해 6,457천톤보다도 적은 6,231천톤으로 책정한 것도 양축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중의 하나이다.

업계에서 금년도 배합사료 수요를 7백만톤이상으로 추정하면서도 그동안 잠잠했던 것은 정부가 7월 1일부터 양계용 배합사료 등을 자동승인 품목으로 수입개방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배합사료의 수입이 개방된 마당에서 쿼터제의 강력한 실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가 새로운 의문으로 남게 된다



체 양계농가의 0.35%에 해당된다.

본회 정태원 회장은 영세 양계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금년 3월 회장 취임때부터 농가부업 양계규모의 상향조정을 주장해 왔으며 문서로도 관계 요로에 건의한 바 있었는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공포 되었다.

한편 대통령령 제11,941호는(86. 6. 30) 우유 또는 유제품을 직접 사용하여 제조한 빙과류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함으로써 우유소비가 촉진되고 빙과류의 품질향상을 기하게 되었다. ■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지난 6월30일 공포하였다.

대통령령 제11,940호로 공포된 개정령의 부칙 2항에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가 발표 되었다.

금년도 사업분부터 적용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는 연간 소득 186만원에서 연간소득240만원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닭, 돼지 등의 마리수가 증가하게 된것이다.

이로써 86년 3월 기준으로 볼때 전국양계농가 302,775호중 10,000수이상 사육농가는 1,075호이며 이들 농가만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전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

(제 6 조의 2 관련)

가	축	별	규	도	비	고
것	소		20	마리	성	축을 기준으로 한다.
	소		30	마리	다	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돼	지		200	마리	는	2 마리를 1 마리로 본
산	양		300	마리	다.	
면	양		300	마리		
토	끼		5,000	마리		
	닭		10,000	마리		
오	리		10,000	마리		